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국항만협회의 행정조사 의무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187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항만협회의 행정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삭제 ...	2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 출 일 : 2024. 7. 24.
3. 회 부 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한국항만협회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한국항만협회의 행정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삭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한국항만협회¹⁾가 해양수산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제9호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u>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u>	제110조(벌칙) ----- ----- ----- ---. 1. ~ 8.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항만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1) 참고자료 p. 5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조사에 따른 제재규정을 보면,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110조 및 제11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등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항만협회에 대한 행정조사 관련 규정]

제102조(한국항만협회의 설립)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02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 제10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한 자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조사 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칙과 과태료를 중복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벌칙규정을 삭제하여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의의가 있음.

참고로 법제처는 행정조사 기본원칙²⁾에 부합하는 행정조사 제도 확립과 민간 행정부담 완화 및 편익 증진을 위해 「항만법」 등 10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9

2) 필요 최소범위 내 실시, 중복조사 방지 등

□ (설립목적) 항만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건설 관련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등 항만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정관)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항만 관련정보의 공동 활용 등 항만관련산업의 발전과 항만관계자의 상호친목 도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설립) '76년 사단법인 창립총회, '08년 항만법 제102조에 의한 특수법인 전환

□ (주요기능)

- 항만법 제36조제4항에 의한 항만시설 기술기준의 발전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사업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항만공사 표준시장단가 산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6조에 의한 사후평가
- 항만건설 관련 정보화 사업
- 항만법 제103조에 의한 항만 관련 국제협력 등의 지원
- 항만에 관한 기술기준서, 회지, 도서, 기타 인쇄물 발간
-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 항만건설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항만건설에 따르는 조사·설계·감리·기술에 관한 용역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항만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